

# I 선거운동 개요



## 1 선거운동의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

☞ 선거법 §58, §59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2022. 2. 15. ~ 2022. 3. 8.)를 말함.
-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등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음.

##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선거법 §58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 활동
-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선거법 §60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선거운동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
- 선거법 등 「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2022. 3. 9.)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국가(지방)공무원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 그밖에 선거법 §60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4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선거법 §218의14⑥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

## 5 단체의 선거참여 활동

☞ 선거법 §218의14⑦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I. 선거운동 개요

# II 국외 선거운동 방법



## 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 선거법 §59, §218의14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구분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없는 방법
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전자우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언제든지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을 할 수 있음.

## 2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 선거법 §218의14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는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 위성방송시설 이용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 각 10회 이내의 방송광고 가능
-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 위성방송시설 이용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 각 5회 이내의 방송연설 가능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가능
-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합하여 총 8회 이내)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예비)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가능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2021. 7. 12.)부터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II. 국외 선거운동 방법

## 3 투표참여 권유활동

☞ 선거법 §58의2

### ○ 할 수 있는 사례

-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선거법 §59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

### ✕ 할 수 없는 사례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산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III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1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명령 등

☞ 선거법 §218의30

- 제한 대상
  - 국외에서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 제한 기간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 (~2027. 3. 9.)

## 2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 선거법 §218의31

- 입국금지 대상
  - 국외에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 입국금지 기간
  -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2027. 5. 9.)
  - ※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님.

II. 국외 선거운동 방법 / III.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소통과 화합의 재외선거  
대한민국의 희망이 됩니다

- 대한민국의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재외국민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여권발급·재발급의 제한 또는 여권반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 IV 위반행위 사례예시

## 1 기부행위

### 기부행위의 금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어 재외국민이나 한인회 등이 정당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 될 수 있음.

### ❌ 할 수 없는 사례

-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비·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금품·음식물·서적·기념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

## 2 비방·허위사실 공표

### 허위사실의 공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 위반행위 조치사례

-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는 동영상(○○○, 뺨깡이여!)을 게재한 행위
- 한인 지역 언론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보도한 기사를 기초로 하여 '○○○와 ○○○ 사이에서 재녀가 있다고 사촌형부인 ○○○총재가 말했나 보다' 등 허위·비방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행위

###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인쇄물·시설물 이용

### ⓪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 축전을 재외거주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행사주최자가 정책간담회 개최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 할 수 없는 사례

-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개최를 안내하는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에 정당·후보자를 선전하거나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회보·소식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위반행위 조치사례

○○이 20여명의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한인 주택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 1,000부 정도 배부

## 4 모임·집회 등 개최

### ⓪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 전에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재외국민을 초청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

## 5 정당활동·정치자금 모금

### ⓪ 할 수 있는 사례

- 당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중앙당·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에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와 무관하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두는 행위  
※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모임의 명칭을 "당원협의회"로 하여서는 아니됨.

- 재외동포간담회·정책간담회·기자회견·향우회·한인회 행사 등 각종집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 정당·국회의원·후보자가 아닌 일반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 특정 단체(한인회·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가 소속 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 6 방송·신문 등 이용

### ❌ 할 수 없는 사례

- 한인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거에서 당선·낙선시키기 위하여 한인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사진·경력·경연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및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한인신문·기관지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하는 행위

### 위반행위 조치사례

재외신문에 '국민 대다수의 뜻을 기만하고 폭압하는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 (중략)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중략)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는 내용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8회 게재

## 7 재외투표 관련

### ⓪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 할 수 없는 사례

-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투표지를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위반행위 조치사례

- 대사관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위반사례 안내

세계 속의 한국인

#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 본 자료는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속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화 82-2-1390)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국민참여소통→정치관계법 질의'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항" ⇒ "선거법 §112①"으로 표기